

의안번호	제 81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**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 및 관리 조례
일부개정조례안**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22년 10월 5일

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

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81
----------	----

제출연월일 : 2022년 10월 5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수산식품 거점단지 운영 관리에 관한 효율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을 변경하고, 수산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수산식품 거점단지 내 시험연구사업 실시과정에서 생산된 양식수산물의 분양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수산물유통시설 정의 신설(안 제2조제5호)
- 수산식품 거점단지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(안 제19조제2항)
- 양식수산물 분양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6장, 제25조 및 제26조)
- 오기 정정 및 띄어쓰기 등 조문 정비(안 제23조)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6. 비용추계서 : 붙임

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“수산물유통시설”이란 수산물(가공물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)의 도매·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·배송·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·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.

제1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.

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행정부지사가”를 “농정국장이”로, “농정국장”을 “축수산과장”으로, “각호의 구분에 따라 도지사가 위촉한다”를 “각호의 사람으로 한다”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내수면산업연구소장(이하 “연구소장”이라 한다)
2. 괴산군부군수
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
 - 가. 수산업 관련 대학·연구소 등에서 교수 또는 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

나. 수산업 관련 단체·행정기관 등에서 10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

다. 그 밖에 도지사가 수산식품 거점단지 운영 관리 분야에 경험과 식견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제23조제1항제2호 중 “관계 있는”을 “관계있는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6호 중 “자 와”를 “자와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결정하여야”를 “결정하여야”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“참여할”을 “참여할”로 한다.

제25조 앞에 “제7장 보칙”을 삭제한다.

제25조 및 제26조를 각각 제27조 및 제28조로 한다.

제27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장 보칙

제6장(제25조 및 제26조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장 수산식품산업 활성화

제25조(양식수산물의 분양) ① 도지사는 수산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구소장이 매년 실시하는 수산식품 거점단지 시험연구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양식수산물을 도내에 소재한 양어장, 수산물유통시설, 그 밖의 수산식품 관련 기관·법인·단체 또는 업체에 분양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양식수산물의 분양은 유상으로 한다.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.

1. 수산 분야(수산식품 분야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국·도립 연구기관에 공급하는 경우
2. 그 밖의 수산 분야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대학, 기관, 단체, 또는 개인에게 연구용으로 제공하는 경우
- ③ 제2항에 따른 유상 분양가격은 해당 양식수산물의 생산원가, 시중 유통가격, 다른 수산 분야 국·도립 연구기관의 분양단가 등을 조사하여 결정한다.

제26조(분양계획의 수립 및 홍보) ① 연구소장은 제25조에 따라 양식수산물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구체적인 분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1. 유상 또는 무상분양 예정 양식수산물의 종류와 물량
2. 유상 또는 무상분양 대상자 선정의 우선순위
3. 분양신청에 필요한 절차, 방법 및 분양시기
4. 분양계획에 대한 공고 등 홍보 방법과 시기
5. 그 밖에 양식수산물 분양에 필요한 사항

② 연구소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양식수산물 분양계획을 도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운영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되어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운영위원회의 위원 중 연구소장과 괴산군부군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은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해당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<u>“수산물유통시설”이란 수산물(가공물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)의 도매·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·배송·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·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.</u></p>
<p>제15조(사용료 납부 등) ①·②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15조(사용료 납부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</p>
<p>제19조(구성 및 존속기한) ① (생략)</p> <p>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<u>행정부지사가</u> 되고, 부위원장은 <u>농정국장이</u> 되며, 그 밖의 위원은 다음 <u>각호의 구분에 따라</u> <u>도지사가</u> 위촉한다.</p> <p>1. <u>수산업 관련 대학·연구소 등에서 교수 또는 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</u></p> <p>2. <u>수산업 관련 단체·행정기관</u></p>	<p>제19조(구성 및 존속기한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농정국장이</u> ----- <u>축수산과장</u>----- -- <u>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.</u></p> <p>1. <u>내수면산업연구소장(이하 “연구소장”이라 한다)</u></p> <p>2. <u>피산군부군수</u></p>

등에서 10년 이상 종사하고
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

3. 그 밖에 도지사가 수산식품
거점단지 관리에 풍부한 경험
과 식 견이 있다고 인정하는
사람

③ ~ ⑥ (생 략)

제23조(위원의 제척·회피·기피
등)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
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
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
에서 제척된다.

1. (생 략)

2.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
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
와 관계 있는 사항

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
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
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

가. 수산업 관련 대학·연구소
등에서 교수 또는 연구위
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
거나 재직하였던 사람

나. 수산업 관련 단체·행정기
관 등에서 10년 이상 종사
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
사람

다. 그 밖에 도지사가 수산식
품 거점단지 운영 관리 분
야에 경험과 식견이 풍부
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③ ~ ⑥ (현행과 같음)

제23조(위원의 제척·회피·기피
등) ① 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

-- 관계있는 -----

3. ~ 5. (생 략)

6.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
이 자문·고문 등을 행하고
있는 자와 이해 관계가 있는
사항

7. (생 략)

②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
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
이유를 구체 적으로 서면으로
소명하고 그 위원장이나 위원
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
고, 위원회는 의결로 위원장이
나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
결정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기
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기피 여
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 할 수
없고, 기피 결정을 받은 당해
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하지 못
한다.

1.·2. (생 략)

③ (생 략)

제7장 보칙

<신 설>

<신 설>

3. ~ 5. (현행과 같음)

6. -----

-- 자와 -----
--

7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결정하여야 -----

참여할 -----

-----.

1.·2. (현행과 같음)

③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제6장 수산식품산업 활성화

제25조(양식수산물)의 분양) ① 도
지사는 수산식품산업 활성화를
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
우 연구소장이 매년 실시하는

수산물식품 거점단지 시험연구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양식수산물을 도내에 소재한 양어장, 수산물유통시설, 그 밖의 수산물식품 관련 기관·법인·단체 또는 업체에 분양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양식수산물의 분양은 유상으로 한다.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.

1. 수산 분야(수산물식품 분야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국·도립 연구기관에 공급하는 경우

2. 그 밖의 수산 분야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대학, 기관, 단체, 또는 개인에게 연구용으로 제공하는 경우

③ 제2항에 따른 유상 분양가격은 해당 양식수산물의 생산원가, 시중 유통가격, 다른 수산 분야 국·도립 연구기관의 분양단가 등을 조사하여 결정한다.

제26조(분양계획의 수립 및 홍보)

① 연구소장은 제25조에 따라

<신 설>

양식수산물을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구체적인 분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1. 유상 또는 무상분양 예정 양식수산물의 종류와 물량
2. 유상 또는 무상분양 대상자 선정의 우선순위
3. 분양신청에 필요한 절차, 방법 및 분양시기
4. 분양계획에 대한 공고 등 홍보 방법과 시기
5. 그 밖에 양식수산물 분양에 필요한 사항

② 연구소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양식수산물 분양계획을 도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.

<신 설>

제25조 · 제26조 (생 략)

제7장 보칙

제27조 · 제28조 (현행 제25조 및 제26조와 같음)

관련법령 발췌

□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2. “수산물유통산업”이란 수산물의 도매·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·배송·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·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.

제50조(수산물 수요개발 및 소비 촉진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소비자의 수산물 선호도 변화에 따른 새로운 수산물의 수요개발과 수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국민의 수산물 기호 변화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새로운 수산물 수요개발
2.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박람회, 시식회, 요리대회 등의 행사 개최
3.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활동
4. 학교급식 및 단체급식에서 수산물 공급 확대를 위한 사업
5. 그 밖의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

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유통업자 또는 관련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□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식품산업과 수산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수산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, 이를 시행하기 위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 및 관리 조례개정안 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- 수산식품 거점단지 운영 관리에 관한 효율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을 변경하고, 수산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수산식품 거점단지 내 시험연구사업 실시과정에서 생산된 양식수산물을 분양하고자 함

2. 비용 발생 요인

- 세 입 : 양식수산물 분양 수입
- 세 출 : 운영위원회 수당 지급

3. 관련조문

- 안 제 25조(양식수산물의 분양) 양식수산물 유상 분양에 따른 분양 수입
- 안 제 24조(수당)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 지급

4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추계기간 : 비용은 지속 발생 예상, 추계는 2022~2026년까지 5년에 대하여 실시
- 양식수산물 분양
 - 현재 판매 가능한 성어 무게 기준(400g)으로 연도별 분양 가능 kg 산정
 - 분양 가능 물량이 전량 분양되는 것으로 가정
 - 현 성어 판매 단가(60,000원/kg) 기준으로 분양단가 산정
 - * 단, 치어를 판매 가능한 성어까지 육성 후 분양하는 상황에서 분양 당시 성어의 정확한 무게 파악이 어려우며, 분양 희망자에 따라 분양량의 변동 가능성 있음. 또한, 분양 당시 유통 판매 단가가 유기적임.
- 운영위원회 수당
 - 위원회 4회 개최, 위원 6인 참석, 출석 수당(100,000원/인), 심사 수당(30,000원/인)
 - 위원 2인 원거리 출석 수당(50,000원/인)

나. 추계 결과

- 산출과정
 - 연도별 판매 가능 성어 kg : 320kg/년, 분양단가 : 50,000원/kg
 - 위원 출석 및 심사 수당 : 위원 6인 * 130,000원/인 * 4회
 - 원거리 위원 출석 수당 : 위원 2인 * 50,000원/인 * 4회
- 산출결과
 - 양식수산물 분양 수입 : 16,000천원/년, 2022년부터 향후 5년간 80,000천원 소요
 - 운영위원회 수당 : 3,520천원/년, 2022년부터 향후 5년간 17,600천원 소요

다. 재원조달방안 : 도비 100%

5. 연도별 비용추계서 : 붙임

6. 작성자 : 내수면산업연구소 내수면산업과장 박종호

